郎中公단소수호비대위 회장단회의

건의문 채택하고 대종회장에게 전달키로

▲ 낭중공단소수호비대위 회장단의 건의문 채택 독회가 열리고 있다.

안동권씨아시조단소유적보존수호비상대책위원회安東權氏亞始祖壇所遺蹟保存守護非常對策委員會가 7월 6일 그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오후 6시에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뒤의 한 음식점에 권영길權寧吉、권영익權寧翼、권오흥權五興、권홍섭權洪燮 공동위원장과 권진택權晉澤、권재종權在琮、권오일權五逸씨 등이 참석하여 아시조 낭중공의 청도단소 이전을 막고 일대의 유적을 보존하는 현안에 대한 선후책을 의논하였다.

여기에서 대종회와 중앙종친회가 물리력을 동원해 이단移壇을 강행하고 이를 막을 힘이 없다고 해서 사법에 호소해 법정에서 다툰다는 것은 망족세가望族世家에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최고령 위원장인 권영길 옹이 이는 불가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회장단이 이치를 가지고 의논을 다투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대종회장을 찾아가 설득하는 길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 건의문의 초안은 권홍섭 위원장과 권재종씨가 각기 작성한 것이 제출되었다. 이를 가지고 낭독회를 벌인 결과 양자를 통합하여 새로운 건의문을 작성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각자가 그 초안을 가지고 돌아가 나름의 수정과 조율을 거쳤고, 1주일 뒤인 7월 13일에 권영익、권홍섭、권오흥 위원장 등이 세종로에서 다시 회동하여 규합 재작성한 건의문을 확정하였다. 건의문은 다섯개항의 건의조건에 전문、후문으로 A4용지 3면 길이인데 조건 5개항은 첫째 청도의 낭중공 유적과 단소는 권성인의 수백년 추원정서가 서린 풍패남양豊沛南陽이므로 이를 훼손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대역부도이고 둘째, 안동이 우리의 본관이면 경주는 시조의 관향이요 청도는 아시조의 거향이니 삼위일체이며 셋째, 단소를 옮기면 유적과 유허、위토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권릉을 잃는데 권릉은 주마탈안走馬脫鞍 혹은 구룡비천九龍飛天의 왕후장상 대지이니 불감훼손不敢毁損이요, 넷째, 안동에서 청도왕래봉사가 어렵다면 경주、영천지역 후손으로 하여금 아시조봉향기구를 결성하여 이를 대행케 하고 다섯째, 향후 권릉과 낭중공 유적、유허 등에 대한 대학박물관학자 수준의 학술조사를 시행할 것 등이었다.

그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建 議 文

安東權氏大宗會長 貴下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옛 정자동亭子洞에 위치한 우리 권성인權姓人의 아시조亞始祖 낭중공郎中公의 유적과 단소壇所에 관한 사항은 선대에서 상당한 근거와 연고에 의거하여 유념망점留念望占하고 수호하여온 것입니다. 숙종 1년, 1765년에 하계霞溪 문형文衡 유愈공이 공암촌孔巖村의 권릉설權陵說을 수탐한 이래 학림鶴林 방訪공, 정간공靖簡公 이판吏判 혁爀공의 탐심을 거쳐 80여년 전 수정遂庭 관찰사 익상益相공 등에 의해 권릉 곁에 설단設壇이 되고 봉하鳳下에 재사齋舍가 건립되며 당시 전조선全朝鮮의 후손이 구재치전鳩財置田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청도의 공암촌으로 이르던 운문면 정상리、봉하리는 우리 백만 권성후손의 중소重所이자 성역聖域임에 틀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중차대한 성문姓門의 공의公義와 이념理念의 실체를 외면하고 그 편의便宜와 접근성을 좇아 이를 가벼이 의논하여 신설이단新設移壇함을 주장하여 감행한다 하면 이는 후잉後仍으로서 크게 무책임하여 돌이킬 수가 없는 죄업罪業을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찌 이를 두려움 없이 감행할 바이겠습니까.

또한 이는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투표에 의하고 각급 선거를 국민전체투표로 결정하듯이 권성인 자손 모두에게 물어 의논케 한 연후에야 결정할 중대사이거늘, 일시의 소수 종원 대표가 충분한 통문通文과 답통答通의 절차도 없이 모여 심사숙고의 겨를이 없이 권모술수의 정치도배가 예사로 하듯 의사봉을 두드려 결정을 하고는 재고불가再考不可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천추에 누累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편의를 좇아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이같은 선례先例가 후대에 끼칠 악영향이 또한 그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오늘에 모인 소수의 편파적인 대종회 임원들이 진정코 3백년을 내려온 선대인들보다 우월한 위선심爲先心과 성효誠孝와 사고력思考力의 소유자라고 누가 단언할 것입니까.

이에 우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를 밝혀 낭중공단소 이전신설의 대오大誤를 숙침宿寢으로 광정匡正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도의 공암촌 정자동 일대의 낭중공 유적과 단소는 우리 권성인의 수백년 성효誠孝와 추원정서追遠情緖가 서린 풍패남양豊沛南陽의 하나이므로 이를 훼손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대역부도大逆不道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안동安東이 우리 시조의 식읍食邑으로서 권성의 본관本貫이면 경주慶州는 신라종성新羅宗姓이신 시조의 관향貫鄕이요, 청도 공암촌淸道孔巖村은 아시조의 거향居鄕이니 이는 우리 후성後姓에게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성역이라 이 중 한 곳이라도 잃는다면 우리가 능히 긍구긍당肯 . 肯堂의 도리를 못하고 기구청전箕ㅋ淸氈을 잇지 못하는 불초무상不肖無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셋째, 단소를 옮기면 여러 구조물 유적과 유허遺墟와 위토전位土田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권릉權陵을 잃는 바 될 것입니다. 권릉이 대지大地임은 감여가堪輿家의 주마탈안走馬脫鞍 혹은 구룡비천九龍飛天 등 명당설이 뒷받침하는 바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아니고는 그 유조幽兆로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를 잃어버려 소멸시키는 처사가 있을 도리가 천하에 없습니다. 대저 권릉이 낭중공 실묘라는 확증이 없다면 그 아니라는 확증은 또 어디에 잇는 것입니까. 만일 권릉이 우리 아시조 낭중공의 진택眞宅이라면, 그게 사실인데도 후손이 미거해 밝히지 못하고서는 이제 수호마저 팽개치고 만다면 이보다 망극할 노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효자는 선대가 앉아 쉬었던 자리나 옥보玉步가 찍혔던 곳마저도 알고서는 불감훼손不敢毁損이라 하였습니다.

넷째, 안동의 대종회에서 청도에 봉사행 왕래가 그리 어렵다면 경주나 영천永川 지역 후손모임으로 하여금 아시조봉향회亞始祖奉享會를 결성하여 수호케 하면 무해할 것입니다. 경주、영천 양처의 후손은 오래 전부터 이를 소망하여 불감청不敢請이언 고소원固所願임을 천하가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봉하리 봉암재사의 지정문화재 신청기각 건은 어리석고도 무지한 처사였습니다. 우선 경북도단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지 말고 청도군 단위 향토문화유적, 즉 비지정문화재로 먼저 신청했어야 하고, 그것도 재사의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권릉 등 제반 유허、유적과 무형의 전설 등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연구분석과 판단을 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권릉에 대한 학술조사, 즉 대학 박물관 학자 규모의 지표조사地表調査와 필요하다면 발굴조사까지 실시하여 시일을 두고 천착하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일조에 훼손하고 나면 만년을 두고 통탄해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사 지금의 다소 어려움을 넘기기가 그다지 어렵다면 형편이 닿는대로 행사를 감쇄減殺하면서 후일을 기다리는 여유를 두고 감내하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심지어 궐사闕祀를 하게 된다손치더라도 지금의 거조擧措보다는 백번 나을 것입니다.

낭중공의 현단소現壇所 또한 형국形局으로서 만대자손의 영화지당부榮華之堂斧로 일점의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버리고 안동의 능곡陵谷 시조의 조역兆域으로 옮기면 양소兩所가 다 침해로 격하格下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능곡의 시조유택幽宅은 괘등卦燈의 지협枝俠한 형국에 금차척지金釵擲地의 소혈처小穴處라 비록 지형이 웅장하지는 않더라도 일대의 산천을 압도하고 진정鎭定하는 기풍이 구비되어 하등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를 도외시하고 시조 묘소 용맥龍脈 건너편 재사 옆의 보판각譜版閣 아래 낭중공을 공향共享코자 제단을 웅설雄設하게 되면 아시조는 천하대지의 자택을 버리고 협지로 옹색히 옮겨앉아 유폐되는 격이요, 제단의 규모와 의물을 크게 하면 할수록 시조 태사공께서는 하마 원존援尊의 혐嫌을 입으시는 바 되어 능동의 찬연한 빛이 희석되어 흐려질 우려만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移壇의 반대의견이 소수라 하나 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입니다. 이같은 사실이 홍보弘報되고 하벽下僻에까지 지실知悉되면 성손종원姓孫宗員의 9할 이상이 이단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십분 해량海諒하시어 이단의 단행을 재고삼고再考三考해 주실 것을 복원앙망伏願仰望하여 마지 않습니다.

2009년 7월 일

安東權氏亞始祖壇所遺蹟保存守護非常對策委員會

共同委員長 : 權寧吉、權寧翼、權五興、權洪燮、權寧星

副委員長 : 權宅鎭、權五甲、權五湜、權貞澤、權赫俊

顧問 : 權翊鉉、權炳洪、權誠、權純顯、權純國

<사진 · 글 權五焄>

6면에서 계속

깁을 좋아하는 습관이 없었으며 그 마음이 곧고 성실하여 일을 명하면 난색을 보이는 일이 없었으니 국가에 훈로勳勞가 있어 다른 부마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 하였다. 시호를 내려 양효襄孝로 하니 갑주를 입고 훈로가 있음이 양襄이고 자혜롭고 부모를 애경하였음이 효孝라 하였다. 한 아들이 있으니 팽彭이다.

화천군이 이처럼 빈한하게 산 것은 그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많지 않은 데서도 기인했을 것이다. 화산부원군은 7남3녀, 10남매의 자녀를 두고 중년에 급서하였는데 그와 같은 여건으로 부유하였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양효공이 일찍부터 무예를 익혀 도진무로 오래 재직하고 절제사로 나가며 중국에 사행을 다녀오는 것 등이 다 그 부친을 닮음이었을 것이다. 또 세조가 소시부터 화천군과 자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연배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세조는 태종 17년, 1417년에 나서 세조 14년, 1468년에 52세로 승하한다. 화천군이 만약 세조와 동갑이라면 16세에 숙근옹주를 상하여 화천군이 되고 19세에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며 이때 부친상을 당하고 세조 8년, 1462년에 46세로 졸하는 것이 된다. 세조가 화천군을 좌익공신 3등에 책훈하고 그 부모의 관작을 추증하면서 부친을 자헌대부 병조판서에서 품등을 6단계 높여 대광보국숭록대부 우의정에 부원군으로까지 추봉한 것은 매우 큰 이수異數의 예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화산부원군 부자에 대한 임금의 특은이었을 것이다.

<사진 · 글 權五焄>